

석면함유제품의 제조·수입·양도·제공 또는 사용금지

제정 2006. 9. 13. 고시 제2006-25호
개정 2007. 7. 2. 고시 제2007-26호

석면함유제품이 암 및 각종질병을 유발함에 따라 2006년 9월 30일 이 제품의 사용금지를 골자로 한 고시가 제정된 데 이어 지난 7월 2일 개정 되었다.

이 고시에는 ‘누구든지 함유된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.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’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 항 제10호에 따라 제조·수입·양도·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 되는 석면함유제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제조 등 금지) 누구든지 함유된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.1퍼센트를 초과하는 석면함유제품을 제조·수입·양도·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석면함유제품 중 석면개스킷제품 및 석면마찰제품(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용 제외)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, 다음 각 호의 제품은 대체품 개발 시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개스킷제품
2. 미사일용 석면단열제품
3. 화학공업 설비용으로서 100℃ 이상 온도의 부식성유체를 취급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입경 140mm 이상의 석면 조인트시트개스킷
4. 화학공업 설비용으로 사용되는 입경 2300mm 이상의 석면 조인트시트개스킷

제2조(경과조치)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석면함유 압출성형시멘트관은 이 고시 시행 후 6월까지 양도·제공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다. ㉠